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34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12월 1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하여 교육 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“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”로 함(안 제5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1000분의 5이상”을 “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”로
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6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5이상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)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00분의 6이내”를 “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신·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)</p> <p>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6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)</p> <p>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</u>의 금액으로 한다.</p>